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6-136호

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81호(2007. 12. 27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마포구 고시 제2012-11호(2012. 1. 12.)로 구역지정 변경 고시되고, 마포구고시 제2012-16호(2012. 1. 19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마포구고시 제2014-37호(2014. 3. 6)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고시, 마포구고시 제2014-48호(2014. 3. 20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, 마포구고시 제2016-38호(2016. 3. 31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마포구고시 제2015-47호(2015. 3. 12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마포구 대흥동 12번지 일대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,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8조 및 제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, 동법 제4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

2016년 10월 13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종 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) 명 칭 :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1) 위 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12번지 일대
- 2) 면 적 : 62,245.80㎡
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1) 성 명 :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대표자: 김종태)
- 2) 주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4길5, 4층(아현동, 공덕자이상가2동)

라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: 2016. 10. 10.

마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

- 1)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(2016. 3. 31.)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
- 2) 조합설립변경신고(조합원 수 변동, 조합원의 권리·의무 변동, 조합사무소의 소재지 변경)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
- 3) 조합 정관변경인가(2016. 8. 31.)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
 - 조합정관 변경[제4조 제1항(사무소) 개정, 제45조(분양신청등) 제6항 신설, 제51조 제1항(보류지) 개정]

4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건폐율 (%)	연면적 (㎡)	용적률 (%)	층수 (지상/ 지하)	높이 (m)	주된용도	비고
62,245.80	12,676.52	26.05	182,061.41	253.77	23/3	65.60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	아파트 1,248세대 및 부대복리 시설

5)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구분	주택규모별 (전용면적기준) (㎡)	공급세대수	관리처분 대상자별 내역			
			조합원 분양	일반분양	보류시설	임대
공동 주택	소계	1,248	508	492	32	216
	39	98	—	—	—	98
	45	94	—	—	—	94

	52T	12	—	—	—	12
	59T	12	—	—	—	12
	59A	256	145	103	8	—
	59B	163	120	32	11	—
	84A	346	112	226	8	—
	84B	128	69	59	—	—
	84C	87	41	46	—	—
	84D	22	5	12	5	—
	96	22	10	12	—	—
	112A	1	1	—	—	—
	112B	5	3	2	—	—
	112C	2	2	—	—	—
	소계	49	7	41	1	—
상가	4,935.96	관리처분계획기준에 따라 향후 상가MD(점포구획 및 업종구분) 확정 후 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을 할 예정임				

6)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
가)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: 변경없음

나)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: 변경없음

7)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: 자진이주기간(관리처분계획인가 후)

후 철거완료시까지